

< 이전기관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>

▣ **(이전기관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**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

※ 「혁신도시법」 제29조의2에 따라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됨

□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

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 등의 본교

※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
※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③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④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□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(예시)

①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②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
③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이전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①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 소재인 경우

②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 소재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 소재인 경우